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90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91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업종 변경 허용	3

I. 개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회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9.

(3) 회 부 일 : 2025. 12.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안번호 제15390호)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함. 이에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5항).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대표발의안)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9.

(3) 회 부 일 : 2025. 12. 22.

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의안번호 제15391호)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업종 변경 허용(김소희의원안)

현 행(상증세법)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u>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u> ※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만 인정 (시행령 제15조제3항) ○ 사후관리 - 상속인이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추징 ※ 시행령 제15조제11항 <u>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에 포함,</u> 한국표준사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은 제외	☐ 업종 변경 허용 ○ 대상 - <u>업종 변경도 계속 경영 기간으로 인정</u> ○ 사후관리 - 상속인이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추징 <u>업종 변경은 추징 제외</u>
현 행(조특법)	개 정 안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 ○ 사후관리 - 수증인이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추징	☐ 업종 변경 허용 ○ 대상 - 수증인이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추징 <u>업종 변경은 추징 제외</u>

* 김소희의원안 2025. 12. 19. 발의(의안번호 15390, 15391)

□ 두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업종 변경을 허용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가업 계속 영위기간으로 인정하면서, 추후 가업 상속인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인이 추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¹⁾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²⁾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

받은 경우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하는 가업증여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가업증여 과세특례 적용대상 및 내용·한도]

구분	요건 및 내용
대상 기업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내용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적용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 한편, 가업상속 공제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고, 상속인 혹은 수증인은 상속·증여받은 가업에 최소 5년간 종사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내의 업종이 아닌 다른 분류의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는 계속 경영한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후세 경영인이 가업상속(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든지 5년 이내에 기존 가업과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 사후관리의무(가업종사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상속·증여 시 감면 받았던 금액과 그 이자 상당액이 추징됨³⁾.

참고로, 업종변경을 포함한 가업미종사로 인한 상속세 추징은 5년간 21건 있었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의무 위반 현황]

(건, 억원)

구분	가업미종사		재산처분		고용유지 위반		당초요건 미비		계	
	건수	추징액	건수	추징액	건수	추징액	건수	추징액	건수	추징액
2020	3	9.7	1	31.7	3	17.3	1	1.7	8	60.4
2021	1	0.4	2	8.0	4	27.0	2	1.9	9	37.4
2022	11	76.6	3	1.5	2	0.5	-	-	16	78.6
2023	4	15.2	3	8.4	4	178	-	-	11	201.6
2024	2	21	-	-	1	1.4	-	-	3	22.4
계	21	122.9	9	49.6	14	224.2	3	3.6	47	400.4

□ 개정안은 가업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하면서 가업 상속 혹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의 증여 이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도 빠르게 변화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업도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특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장기간 운영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업종 변경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⁴⁾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① 종래의 가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략한 경우나 ②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이 첨단산업 관련 분야나 뿌리산업 등과 같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인 경우에조차 업종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종래 가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업종변경을 허용하였더라면 유지되었을 고용 또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업종전환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12168호, 2014.1.1.시행) 개정이유

(생략)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며, (생략)

문 의 처
02)6788-5161